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851
----------	-------

발의연월일 : 2025. 9. 10.

발 의 자 : 박범계 · 장종태 · 황정아
박정현 · 장철민 · 이광희
문정복 · 황명선 · 강준현
조승래 · 박용갑 의원
(11인)

제안이유

첨단기술 보호가 국가안보 차원으로 격상됨에 따라 기술 유출·침해에 대해 전문성 있는 법원에서 신속·정확한 처리와 일관성 있는 판결이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식재산 소송 관할집중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관련 민사 본안소송 항소심 사건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반면, 지재권 민사가처분 사건, 지식재산 형사소송과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무역위 처분 및 특허청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특허법원으로 관할이 집중되어 있지 않아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는 분쟁해결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첨단기술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기술유출 및 지식재산 침해 피해에 대한 신속·정확한 처리와 일관성 있는 판결을 위하여 지식재산

전문법원인 특허법원 중심의 지식재산 소송 항소심 관할집중 등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를 개선하고자 「법원조직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식재산 민사본안소송 항소심, 민사가처분 사건 항고심의 관할을 모두 특허법원으로 집중하되, 민사본안소송 항소심의 관할집중은 「민사소송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안번호 221285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설)에 따른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식물신품종 보호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산업재산 및 기술안보 관련 8개 법률의 지식재산권 등을 대상으로 하고, 민사가처분 사건 항고심의 관할집중은 민사집행법 제303조제2항(의안번호 221285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설)에 따른 사건의 항고사건을 대상으로 함(안 제28조, 안 제28조의4제2호·제3호 및 안 제32조제2항).

나. 형사소송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4조의2 각 호(의안번호 221285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설) 위반 사건의 항소 또는 항고사건의 관할을 특허법원으로 집중하되, 「형사소송법」 제4조의2(의안번호 221285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설)에 따른 법원(중복관할법원이 인정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외의 법원

(현행 「형사소송법」 제4조에 따른 토지관할 법원)에서 재판한 사건의 항소 또는 항고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8조제5항(의안번호 221285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설)에 따라 피고인의 의견을 들어 이송된 사건에 한하여 특허법원으로 집중하여 처리하도록 함(안 제28조, 안 제28조의4 제4호 및 안 제32조제2항).

다. 지식재산과 관련된 행정소송으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역위원회의 지식재산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사건과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이들 법률에 근거한 명령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항소심의 경우에도 특허법원으로 집중하여 처리하도록 함(안 제28조, 안 제28조의4 제5호 및 제6호, 안 제32조제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은 박범계위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55호), 김정재위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53호)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8조의4제2호”를 “제28조의4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제28조의3제2항 중 “제27조제3항”을 “제27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28조의4제2호 중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제2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7호로 하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민사집행법」 제303조제2항에 따른 사건의 항고사건
4. 「형사소송법」 제4조의2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 사건의 항소 또는 항고사건(다만, 「형사소송법」 제4조의2에 따른 법원 외의 법원에서 재판한 사건의 항소 또는 항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이송된 사건에 한정한다)
5.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이하 “산업재산권법”이라 한다) 및 산업재산권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사건의 항소사건

6.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불공정무역조사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행정소송 사건의 항소사건 중 불공정무역조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 사건

제32조제2항 단서 중 “제28조의4제2호”를 “제28조의4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8조(심판권) 고등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다만,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제28조(심판권) ----- ----- . ----- 제28조의4제2호부터 제7호까지-----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8조의3(부) ① (생략)	제28조의3(부) ① (현행과 같음)
② 특허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제27조제3항 및 제4항-----.
제28조의4(심판권) 특허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제28조의4(심판권)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건의 항소사건	2. -----제24조제1항 및 제2항----- -----
<신설>	3. 「민사집행법」 제303조제2항에 따른 사건의 항고사건
<신설>	4. 「형사소송법」 제4조의2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 사건의 항소 또는 항고사건(다만, 「형사소송법」 제4조의2에 따른 법원 외의 법원에서 재판한 사건의 항소 또는 항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8

<신 설>

<신 설>

3. (생략)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생략)

②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
는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
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제2호에 해

조제5항에 따라 이송된 사건
에 한정한다)

5.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이하 “산업재산권법”이라 한다) 및 산업재산권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사건의 항소사건

6.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불공정무역조사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행정소송 사건의 항소사건 중 불공정무역조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 사건

7. (현행 제3호와 같음)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현
행과 같음)

②

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 으로 심판한다. 다만, <u>제28조의 4제2호</u>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 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 -----<u>제28조의 4제2호부터 제7호까지</u>----- -----.
---	---